

1. 개정이유

항공보안법이 개정(법률 제18354호, 2021. 7. 27. 공포)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,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·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미성년자의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신분증명서의 종류 규정(시행규칙안 제8조의5 신설)

- 1) 19세 미만은 주민등록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, 각종 학교*에서 발급한 학생증도 신분증명서로 인정

*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설립된 학교(외국인학교 포함)

- 2)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보안협회의 협의를 거친 증명서나 서류
- 3)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·성명·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

나. 14세 미만에 대해 신분증명서로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규정(시행규칙안 제8조의6 신설)

- 1) 부모, 친족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보호자의 확인
- 2)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제학중인 학교의 교사나 교원의 확인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2. 00. ~ 1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협의 전

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5 및 제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5(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) ①

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나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.

1.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

가. 주민등록 등·초본

나. 가족관계증명서

다. 건강보험증

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에서 “학교”라 한다)에서 발급하는 학생증

2.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보안협회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: (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증명서나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)항공보안협회의장이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항공보안협회의 협의를 거친 증명서나 서

류

② 영 제15조의2제1항제8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

제8조의6(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) 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영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와 동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확인을 통해 본인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

1. 부모, 친족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보호자

2.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나 교원

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보호자나 교사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과의 관계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8조의5(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) ① 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나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.</u> <u>1.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</u> <u>가. 주민등록 등·초본</u> <u>나. 가족관계증명서</u> <u>다. 건강보험증</u> <u>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에서 “학교”라 한다)에서 발급하는 학생증</u> <u>2.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보안협회의 협의</u>를 거쳐 정하는 경우: (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증명서나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)항공보안협회의회의장이 항공기에 탑승하려		

<신 설>

는 사람의 본인 일치 여부를
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
항공보안협회의 협의를 거
친 증명서나 서류

② 영 제15조의2제1항제8호에
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것”이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
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
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
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
는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

제8조의6(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
법) 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
사업자는 영 제15조의3제2항 단
서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는
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
그와 동반하는 다음 각 호의 사
람의 확인을 통해 본인 일치 여
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
다.

1. 부모, 친족 등 항공기에 탑승
하는 사람의 보호자
2.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
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나 교
원

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

는 보호자나 교사는 항공기에
탑승하는 사람과의 관계나 본인
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
증명서 또는 서류를 보여주어야
한다.